

보도자료


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3.4.(수)
--	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		-	
책 임 자	금융위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 (02-2100-2690)	- 담당자	허남혁 주무관 (02-2100-2695)
7 6 A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홍 순 간 (02-3145-7290)	급 경 작	문정호 팀장 (02-3145-7301)

제 목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□ 금융위원회는 3월 4일(수)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㈜한일진공에 대하여,
 -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,32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
 - ※ ㈜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1월 22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.
 - * 1월 22일 보도자료 <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>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

※ 본 자료를 인용 보도
 할 경우 출처를 표기
 해 주십시오.
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조사 ·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2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0.1.22. 의결) (제4차 금융위원회, 2020.3.4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(단위 · 백단권) 조 치
㈜한일진공	[회사]	회 사 :
결산기 : 2016.12.31. 2017.03.31.	①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등 (연결 '16년~'17년3분기 27,705백만원~51,864백만원	- 과징금 1,325백만원 (前대표이사 : 12백만원)
2017.06.30. 2017.09.30.	별도 '16년~'17년3분기 30,841백만원~54,770백만원)	- 과태료 36백만원
2017.12.31. 2018.03.31. 2018.06.30.	- 회사는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,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,	- 감사인지정 2년
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: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	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파생상품평가이익(당기손익)과 매도가능 금융자산평가이익(기타포괄손익)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함 	
	②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(연결 '16년~'18년반기 1,689백만원~7,641백만원 별도 '16년~'18년반기 921백만원~7,473백만원)	
	 회사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 겸직 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던 OOOOOO에 대한 투자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회계처리했어야 함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련 평가손익을 부당계상함 	
	③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	
	- 회사는 증권신고서('17.12.13.)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7기('16년), 제8기('17년)반기 및 제8기('17년)3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함	
	④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	
	- 회사는 소액공모 공시서류('17.11.24.)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7기('16년) 및 제8기 ('17년)3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함	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